

의안번호	2218344
의 퇴 인	최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 6. 1.
추계번호	26A2236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2 (특별경영실적 평가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해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－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요건: ·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 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· 재무건정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－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실시 기준, 방법,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8조의2 (특별경영실적 평가)	●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해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특별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규모 및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수 등을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

- 개정안에 따른 특별경영실적 평가는 재무건정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데, 현 시점에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요건에 해당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움
- 또한,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특별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실시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비의 집행액을 살펴보면, 2022년 35.6억원, 2024년 38.6억원으로 3년간 총 111.9억원으로 나타남

[표 1]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비 결산액 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비 결산액	35.6	37.7	38.6	111.9

자료: 재정경제부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